
**코로나19 관련
국내 기업인 및 외투기업인 · 주한
외교단에 대한 출 · 입국 절차
개선방안 정책건의(안)**

2020년 7월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인 해외비즈니스 활동 관련

□ 범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 경제외교의 결과로 16개국 1.4만명 이상 한국기업인(필수 엔지니어 중심) 특별입국 성사

- 7.27 현재 한국발 입국금지국이 104개국에 달하는 가운데, 외교부산업부재외공관 범부처 총력 경제외교의 결과로 16개국*에서 14,000여명 이상의 한국 기업인 특별입국이 이루어지거나 진행 중

* 아시아·중동(8) : 중국, 베트남, 인니, 태국, 필리핀, 인도, 카타르, 쿠웨이트
동유럽(4) :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중남미(3) :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중앙아(1) : 우즈베키스탄

【 정부의 기업인 특별입국 성사 등 주요 성과 】

- 중 국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 (5.1) →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삼성SDI·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직원 215명 텐진 출국(5.1)
 - 5.1~6.29 특별전세기 26편 운항. 한국 기업인 3,697명 특별입국
 -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 159명 광동성 向 출국(7.23)
- 베트남
 - 4월 29일 기업인 출장단 340명 1차 입국
 - 6월 8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인력 340명 포함 2,600여명 입국
 - 7월 22일부터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1,500명 베트남 특별입국 개시
- 동유럽 : 7월 17일 현재 약 3천 명의 필수인력 입국
- 인도네시아 : 현대차 공장 건설인력 150여명 예외 입국 허용
- 중남미 : 3개국 40여명 입국
 - 칠레 : 차카오 교량 건설 사업을 위한 현대건설 인력 20여명 입국
 - 아르헨티나 : 리툼 데모플랜트 사업 관련 포스코건설 인력 16명 입국
 - 과테말라 : 온두라스 주재 한국 기업인 육로 입국

자료 : 외교부, 산업부 보도자료 등 종합

□ 그러나 기업인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발돋움 위한
통상적 해외비즈니스 활동은 여전히 봉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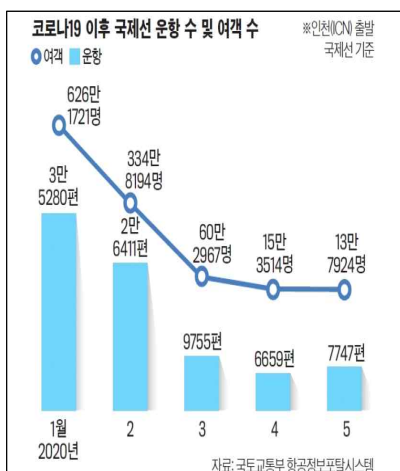
- (18대 교역국 중 정상입국 가능국가 : 미국, 대만 2개국) 7.27
 현재 '19년 기준 교역비중이 1%가 넘는 18개 교역국 중 기
 업인 정상입국 가능국은 미국과 대만 2개국에 불과

* 대만, 한국·일본 등 15개국 기업인 입국 허용(6.22)

19년 교역비중 1% 이상 18개국에 대한 기업인 입국 가능 여부 (7월 27일 현재, △ 예외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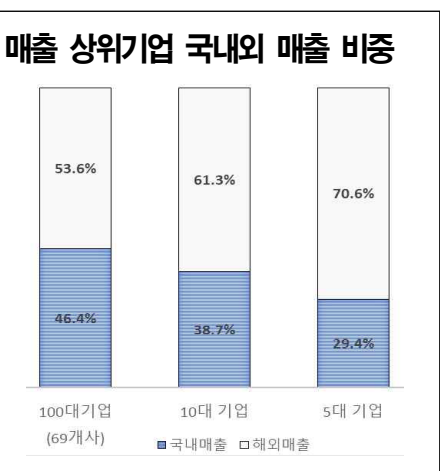
순위	국가	교역 비중	입국 가능	비고	순위	국가	교역 비중	입국 가능	비고
1	중국	23.3%	△	8월부터 유학취업 비자발급 예정	10	러시아	2.1%	X	
2	미국	12.9%	○		11	인도	2.0%	△	
3	일본	7.3%	X	8월 중 한국인 입국 허용 검토 중	12	싱가폴	1.9%	X	예외 입국 협의 중
4	베트남	6.6%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국민 입국 허용 검토 중	13	말련	1.7%	X	
5	홍콩	3.2%	X		14	멕시코	1.6%	X	
6	대만	3.0%	○	한국, 일본 등 15개국 기업인 입국 허용(6.22)	15	인니	1.6%	△	
7	독일	2.7%	X	EU는 원칙 허용(7.1)	16	태국	1.3%	△	
8	호주	2.7%	X		17	필리핀	1.1%	△	
9	사우디	2.4%	X		18	캐나다	1.1%	X	

- 미국·대만을 제외한 각국의 입국 금지, 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으로 기업인의 해외활동은 특별목적(계약, 투자 등), 특
 별사유(영주권 소지 등)를 제외하고는 전면 봉쇄상태



19년 매출 상위기업 해외매출 비중

No	기업명	해외비중
1	삼성전자(주)	85.2%
2	현대자동차(주)	64.2%
3	(주)포스코	36.5%
4	LG전자(주)	64.0%
5	기아자동차(주)	69.2%
상위 5대 기업		70.6%
6	(주)한화	16.8%
7	SK이노베이션(주)	48.3%
8	현대모비스(주)	55.9%
9	CJ(주)	35.8%
10	삼성물산(주)	32.3%
상위 10대 기업		61.3%



- (까다로운 사전·사후 절차로 해외출장 자제 포기) ①해외출장 사전준비(1~2주 소요), ②재입국 후 2~14일 격리조치에 따라 2박 3일 단기 해외출장 경우도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일이 소요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중국 입국, 한국 재입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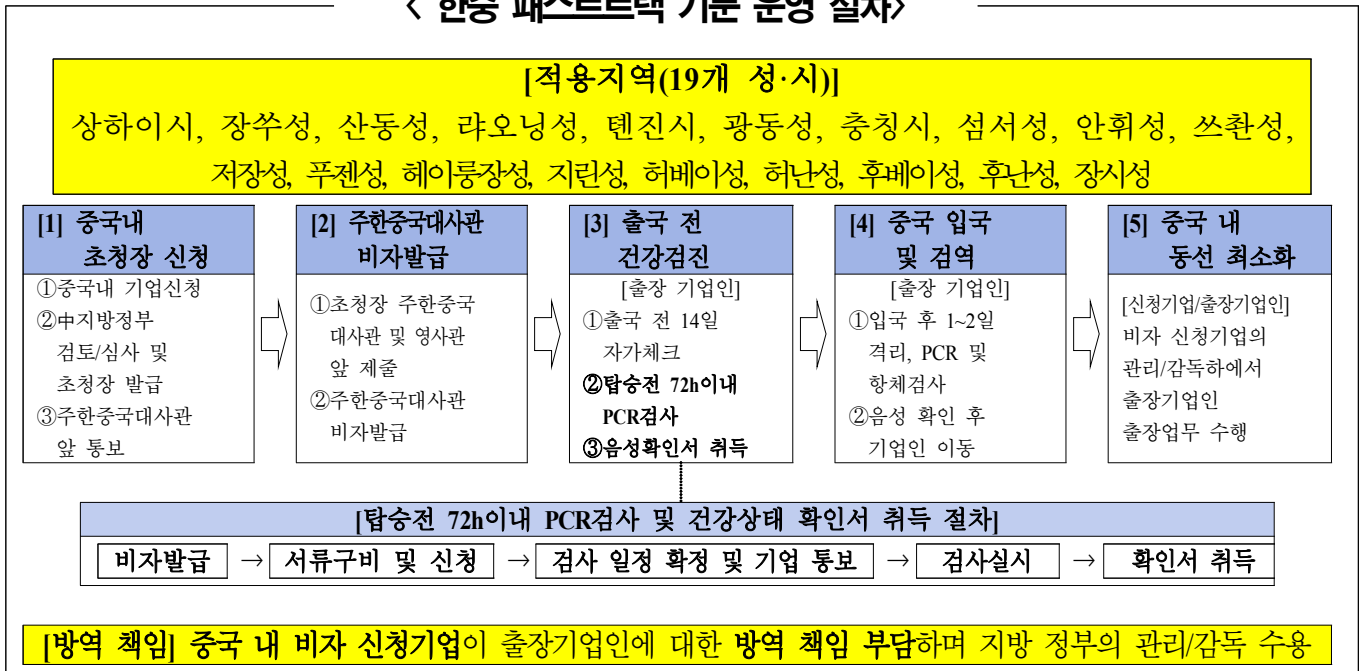
일시 귀국 중소기업 중국주재원 : 40일 걸려	한국 근무 엔지니어 중국 출장 : 4주 소요
2월 코로나19로 일시 귀국 5월 15일 중국 입국을 위한 핵산 검사 / 서울 모 병원 이후 중국 비자 발급 서류 준비 5월 28일 중국 기업 발급 초청장 도착 6월 8일 주한중국대사관 비자 발급 6월 20일 비행기 탑승전(72시간 이전) 추가 핵산 검사 6월 22일 인천 → 중국 우시 중국 전세기 탑승 → 2일 호텔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장 입수 ○ 비자 신청 발급 ○ 건강검진(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 입국·검역(1~2일 격리, 코로나19 검사) → 현지 활동 ○ 귀국 → 2주 자가격리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비즈니스 출장시 절차

Outbound(국내→해외 입국시)		Inbound (해외→국내 입국시)
중국	기타국가	
중국내 초청장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서 제출 ○ 지방정부 주관 부처가 심사 후 「초청장」을 신청 기업에 발급 -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명단 통보 		현지 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이 현지 공관에 자가격리면제 신청 (비자 신청 외국인은 코로나19 관련 증상 無 진단서 제출 필요)
중국 비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초청장」 사본 첨부해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비자 발급 신청 ○ 주한중국대사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자 발급 		주무부처 자가격리면제 필요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요기업이 자가격리면제 요건 심사를 주무부처에 요청 ○ 해당과 등 - 격리면제 신청자의 입국 목적,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인지 심사 ○ 산업부 담당과 - 격리면제 필요성 인정자 정보 공관 전달(외교부 경유)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①출국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 ②비행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③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 포함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공관', ①주무부처 의견 고려해 면제서 발급 심사 ②최종 면제서 발급
입국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①입국 직후 해당 지방정부 지정 장소 1-2일간 격리 ②격리 중 코로나19 PCR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입국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입국 직후 정부 지정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검(최대 1박2일 소요) ○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 (중국 패스트트랙의 경우, 실제 혜택은 일부 기업 한정) 중국 측의 △지정차량, 지정동선(호텔 ↔ 공장·회사) 이동 허용, △제한적 초청장 발급, △일부지역의 초청장 신청단계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등 엄격한 요건으로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혜택은 전세기 운항이 가능한 일부 기업 한정

〈 한중 패스트트랙 기본 운영 절차 〉



[2] 외투기업인, 주한 외교단 관련사항

- (출입국 관련 각종 규제는 외투기업 국내투자 확대의 새로운 장애요인) ① 외투기업인의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전 재입국 허가신청, ②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은 방역관리 측면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국내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우려

2. 최근 대만, 영국 등 출입국 절차 완화 사례

□ 대만

- 6월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등 11개 저위험국과 한국, 일본 등 4개국의 기업인 및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
- 기존 14일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 영국

- 7월 10일부터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 허용
- 동 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조치

대만 사례 (6월 22일부터 시행)

영국 사례 (7월 10일부터 시행)

대상국가 (총 15개국)	입국허용 대상	자가격리	대상국가 (총 59개국)	입국허용 대상	자가격리
저위험국 (11개) 뉴질랜드, 호주,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베트남, 홍콩, 태국, 몽골, 부탄	기업인 유학생	자가격리 5일째부터 검사,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조치 해제	프랑스, 독일, 홍콩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한국 , 대만 , 베트남 등	제한 없음	○ 자가격리 면제 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 입국 전 14일 내 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 방문/경유시 14일 격리 -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는 도착 48시간 전 제출
중저위험국 (4개) 한국 , 일본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상동	자가격리 7일째부터 검사,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조치 해제			

3. 국내외 기업인 및 주한 외교단 출입국 절차 개선의견

① 8월부터 코로나19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인·유학생 대상 상호 비자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

○ 적용기준 ① (대만 사례 준용)

※ 대만 기준 : 각 국가의 전염병 상황 및 추세, 모니터링 및 검사 용량, 전염병 정보 투명성, 지역 및 주변국 전염병 상황 종합고려 (2주마다 갱신검토)

- 저위험국(12) : 대만, 뉴질랜드, 호주,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베트남, 홍콩, 태국, 몽골, 부탄

- 중저위험국(3)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중국 포함 여부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신중 검토

○ 적용기준 ② (EU 기준 준용) : 코로나19 감염률 인구 10만명당 19명 미만 국가

※ EU 적용국 : 한국, 알제리·호주·캐나다·조지아·일본·모로코·뉴질랜드·르완다·태국·튀니지·우루과이·중국 등 13개국

○ 적용기준 ③ : 그 외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 중 코로나19 상황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 교역비중 상위 국가 기업인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정지조치 완화의 전향적 검토 필요

② 대만 수준으로 기업인·외투기업·외교단에 대한 자가격리기간 단축(현행 2주 → 5~7일) 또는 면제

○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 입국 ①한국 기업인, ②한국 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인에 대한 자가격리기간 단축

- 저위험국 : 자가격리 5일째부터 검사 진행.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 해제. 비용은 자비부담
- 중저위험국 : 자가격리 7일째부터 검사 진행.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 조치 해제. 비용은 자비부담

③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기업인 의견 적극 반영

- 기시행중인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관련 심사 시 기업인 의견 적극 반영
 - ※ 자가격리 면제심사 가이드라인 : ① 국내 방문목적이 투자, 계약, 기술지원, 대규모 사고대응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 ② 국내 방문이 시급하며, 격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③ 국내 입국 전 해외방문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일 것 등
 - ※ 자가격리 면제신청자는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사전 검사 필수
- 방문목적, 방문의 시급성, 격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심사에 있어 기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④ 기업인 입출국자 확대 대비, 인천공항 등에 국내외 기업인·외교관 전용* 코로나19 검사 인프라 확충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인천공항 등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당국 설치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함
 - * 임시생활시설 :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가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
 - * 경기도에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새로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

- 이에 따라 5월 19일 중국 출장 후 귀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김포공항 도착 → 공항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 김포 임시생활시설(마리나베이) 버스 이동 →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대기 → 무증상 확인 후 귀가

특별 입국 절차

도착 직후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전용 입국장(A, F입국장)으로 안내

검역

-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체온 측정
- 내국인 자가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

특별입국절차

- 특별검역신고서(한국 거주지, 연락처,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 확인
- 자가 진단앱 설치

무증상시

검역 확인증 배부

↓

입국 심사 통과

전용 앱을 통해 14일간 자가 진단 보고

유증상시 (외국인)

인천공항 중앙검역 의료지원 센터 진단

↓

확진 시 입국 거부

본국으로 귀국

유증상시 (한국인 및 외국인 등록자)

인천공항 중앙검역 의료지원 센터 진단

↓

입국 심사 통과

확진 시

확진 시 곧바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격리조치

인천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



- 향후 코로나19 저위험국, 중저위험국 등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기업인 입국자 확대에 대비, 인천공항 등에 ABTC 카드* 소지자 등 국내외 기업인, 외교관 전용 코로나19 검사 인프라 확충을 추진

* ABTC 카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ABTC 소지자는 비자 유효